국무총리 훈령 제318호 1995. 8. 29.

소관부처 : 제3행정조정실

제 목 : 『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규정』 폐지

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규정의 폐지규정(안)

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302호, '94. 10. 27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직원등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중앙안전점검통제단 파견공무원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행정지원반 파견공무원으로 본다.